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01
----------	-------

발의연월일 : 2025. 7. 21.

발 의 자 : 곽규택 · 이현승 · 김기현
안상훈 · 최수진 · 박충권
백종헌 · 송석준 · 서지영
이달희 · 구자근 · 정성국
박대출 · 인요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 이념 훼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과 정책 집행력, 국가 재정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임.

이에 국고보조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와 동의의 절차를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8까지를 각각 제27조의3부터 제27조의9까지로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7조의6(중전의 제27조의 5)제2항 중 “제27조의4”를 “제27조의5”로 한다.

제2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의 사전 협의 및 동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고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은 같은 항에 따라 소집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소속 지방정부 위원 중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의 사전협의 및 동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고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은 같은 항에 따라 소집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소속 지방정부위원 중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다.</u> <u>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u>

	<u>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제27조의2</u>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생략)	<u>제27조의3</u> (지방재정관리위원회) (현행 제27조의2와 같음)
<u>제27조의3</u>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생략)	<u>제27조의4</u>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현행 제27조의3과 같음)
<u>제27조의4</u> (국고보조금의 관리) (생략)	<u>제27조의5</u> (국고보조금의 관리) (현행 제27조의4와 같음)
<u>제27조의5</u>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 ① (생략)	<u>제27조의6</u>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 관서의 장은 제24조, <u>제27조의4</u>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 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 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② ----- ----- <u>제27조의5</u> - ----- ----- -----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제27조의6</u> (지방재정영향평가) (생 략)	<u>제27조의7</u> (지방재정영향평가) (현 행 제27조의6과 같음)
<u>제27조의7</u> (국고보조사무의 지방	<u>제27조의8</u> (국고보조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생략) <u>제27조의8</u>(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생략)	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현행 제27조의7과 같음) <u>제27조의9</u>(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현행 제27조의8과 같음)
---	---